

[별표 5의11] <개정 2010.11.10>

이륜자동차 손조작식 조종장치의 식별표시 및 조명기준(제65조제2항 관련)

표시장치	식별색상	식별단어 또는 약어	식별부호	조명기준
원동기 정지	-	정지 또는 Engine Stop		설치가능
손조작 스로틀	-	스로틀 또는 Throttle		설치가능
원동기 시동	-	시동 또는 Engine Start		설치가능
수동초우크	-	초우크 또는 Choke		설치가능
연료차단밸브 잠김	-	잠김 또는 Closed		설치가능
연료차단밸브 열림	-	열림 또는 Open		설치가능
경음기	-	경음기 또는 Horn		설치가능
차폭등 스위치	-			설치가능
등화장치 조작스위치	-			설치가능
주차등 스위치	-			설치가능

주

- 운전자가 이륜자동차에 탑승한 상태에서 조종장치의 식별표시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다음 각 목의 조종장치를 제외한 그 밖의 조종장치의 식별표시는 오프위치에서 운전자가 식별표시를 바르게 볼 수 있어야 한다.
 - 회전식 등화점등장치 및 회전식 전조등, 후미등의 조종장치
 - 오프위치가 없는 회전식 조종장치
 - 경음기의 조종장치
- 제작자들은 식별표시에 다른 식별표시를 추가하여 표시내용을 명확히 할 수 있다.
- 조명을 설치하여야 하는 조종장치의 식별표시는 전조등이 지속적으로 점등되는 경우에 점등되는 구조이어야 한다.
- 원동기시동 및 원동기정지를 위한 조종장치의 식별표시는 해당 조종장치들이 열쇠잠금장치와 별도로 사용되는 경우에 적용한다.
- 등화점등장치에 의하여 조종되는 조종장치는 별도의 식별표시나 조명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.